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순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3
----------	---------

발의연월일 : 2020년 2월 일

발 의 자 : 송순효, 황동현, 이충현, 박성호
강선영, 윤유선, 이의걸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강서구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나.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용어정의(안 제2조)

다.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추가(안 제4조)

라.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범위 명확화(안 제5조)

마.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 명문화
(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8조, 제4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20. 2. 11. ~ 2. 15.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체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포함)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종목 체육의 육성·지원
5.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용 지원
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강서구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